

보내는 사람

“캐릭터 또는 로고”

받는 사람

소집 통지서

통지번호: _____ ※ 뒤쪽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등 안내하는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회복무요원 소집 [] 군사교육소집

성명	생년월일
주소/업체 소재지	
복무기관/업체명	
소집일시	군사교육소집기간
소집부대(장소)	

「병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집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받았을 때 (영수증)	
성명			
생년월일			
소집일			
소집부대			
금액			
◆ 유의사항 여비를 찾으신 후 입영하지 못한 경우 입금정보 "보내는 분"에 반드시 본인 이 름을 적은 후 아래 계좌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급국날짜도장	
◆ 반납계좌 우체국 000-000-0000000			
(본인 보관용)			

통지번호 _____		여비를 찾으실 때					
		[] 계좌입금		[] 우체국방문 수령			
가입자 성명							
계좌번호							
성명							
생년월일							
소집일/부대							
여비지급기간							
금액	십만	만	천	백	십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취급국날짜도장	
년 월 일							
영수인 (서명 또는 인)							
(우체국 보관용)							

소집대상자가 알아야 할 사항

- 군사교육소집 시 유의사항
 1. 소집 통지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및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일 발급받은 신용카드(이하 "나라사랑카드"라 하며, 해당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만 해당합니다)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집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복용 중인 의약품은 지참이 가능합니다.
 3. 군 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소집부대에서 지급하므로 부대 주변에서 판매하는 세면도구, 군번줄, 고무줄, 바느질세트, 양말, 볼펜, 손톱깎이, 군인수첩, 전투화 깔창, 상비약 등은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 주변에서 구입한 불필요한 물품은 소집부대에서 회수하여 귀하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4. 소집 시 복장은 간소복에 3cm 스포츠형 머리로 해 주시고, 퇴소 시 예비군복, 군화 등을 넣을 수 있는 가방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훈련 중 현금카드, 휴대전화 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현금도 과다한 금액은 불필요하니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데 필요한 금액 정도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6. 복직보장 안내: 「병역법」 제74조에 따라 고용주 등은 병역의무자가 소집에 의하여 입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하게 하고 그 복무를 마치면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의2에 따라 병역이행 시까지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을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2.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병역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으면 「병역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편입이 취소됩니다.

소집일 연기 등 안내

-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일 5일 전까지 관련 민원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소집일 연기 사유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 질병 또는 심신장애
 - 국외여행허가 후 출국대기, 대학(원) 입학시험 응시 등
 - 전시근로역 편입 사유
 -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출원안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병무청 지정병원 등에서 발행한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역복무 변경·면제신청서를 지방병무청(병무지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집부대 신체검사 등 안내

- 지방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거나, 입영판정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소집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 소집 후 7일 이내 소집부대 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보충역 복무에 부적합하거나 15일 이상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귀가 조치되고, 교육훈련 중 질병 등의 사유로 훈련이 곤란한 사람은 퇴영 조치됩니다.
 - ※ 입영 전 과다한 음주 또는 기름진 음식 섭취는 혈압 및 지방간 수치를 일시적으로 상승시켜 본의 아니게 귀가될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집 시 병무용 진단서, 수술기록지, 방사선 필름 등을 지참하시면 소집부대 신체검사에 참고하게 됩니다.

여비수령 위임장

입영여비를 아래 사람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위임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임자(병역의무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대리 수령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주소:
 - 관계: 연락처(☎) :

대리 수령자는 신분증 지참

여비수령 및 반납 안내

- 앞쪽 하단 “여비를 찾으실 때”의 “우체국방문 수령”란에 √ 표시된 사람의 소집 여비는 지급기간 동안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아야 합니다.
 - ☞ 소집 통지서(앞쪽 서식), 신분증 지참
 - ※ 여비 지급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병무지청)으로 문의(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앞쪽 하단 “여비를 찾으실 때”의 “계좌입금”란에 √ 표시된 사람은 병무청에 등록된 계좌로 여비가 입금됩니다. 여비입금계좌를 등록(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거나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여비 지급액은 주소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기 또는 가사사정으로 입영하지 못할 경우 여비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만약, 이미 찾으신 경우에는 앞쪽의 “여비를 받았을 때”에 기재된 유의사항에 따라 찾으신 여비를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